## ■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 - 51호

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

## 1. 개정이유

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유상증자시 신주 발행가액 산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, '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(K-OTC Pro)' 개설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함

## 2. 주요 내용

- 가. K-OTC Pro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 설정(안 제2-2조의3 제2항)
  - 1)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영위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 무집행사원 추가
  - 2)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상법상 유한회사·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투자회사 추가

- 나. 코넥스 상장기업 유상증자시 신주가격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(안 제5-18조)
  - 1) 제3자 배정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고, 대주주·특수관계인 증 자참여를 배제하는 경우 기준 주가에 10% 초과 할인을 적용 (제4항)
  - 2) 일반공모시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 우 신주가격결정 규제를 면제(제5항)

## 3. 세부 개정 내용

- □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'고시·공고·훈령'을 참조\*
  - \* 금융위원회(www.fsc.go.kr)→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고시・공고・훈령